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운영 현황과 전망\*

이 영 학\*\*

1. 머리말
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역할
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요건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현황과 계획
5.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양성
6.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 이 연구는 2009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이 글은 2009년 4월 3일 한국기록학회의 제 9회 기록학 학술심포지움 ‘기록관리법 10년 - 한국 기록관리의 현황과 전망 -’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교수  
주요 논저: 「행정박물의 유형분류 및 선별방안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7, 한국기록학회, 2008;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기록관리」 『역사문화연구』 30, 2008; 「대한제국시기의 기록관리」 『기록학연구』 19, 2009; 「대통령 기록관리제도 시행의 의의와 과제」 『역사문화연구』 33, 2009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위 법률에서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였지만 실현되고 있지 않다가, 2005년에 들어서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이 본격화되었다.

참여정부에서 2005년 2월 연구직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되었고, 이 규정에 의해 동년 7월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45개 부서에 각 1명씩의 기록연구직이 배치되었다. 이 기록연구직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각 중앙부처의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07년에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6개 광역시와 광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2007년 말까지 배치하도록 하였고, 인구수 15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인 경우에는 2008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지만, 아직 기록연구사의 배치가 법률 규정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또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특히 전문요원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록물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밀기록물이나 비공개 기록물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비전임 계약직 전문요원에게 도덕성이나 전문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기록관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첩경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시켜, 해당 기관의 조직과 성격에 맞도록 기록관리제도를 정착해가는 일이다.

**주제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기록연구사, 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 1. 머리말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으로 약칭)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한국의 기록관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기록물관리법」에서는 기록물관리는 무엇이며,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sup>1)</sup>하고자 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가 중요하며, 그를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기록물관리기관 등이 필요함을 적시하였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기록관리 혁신”을 통하여 정부 개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기록관이 설립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공공기관의 기록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국가기록원에서 기록연구사를 선발하였으며, 2005년에 중앙부처에서 기록연구사를 채용하여 배치하였다.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기록연구사들이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록연구사들이 자신의 기관에서 점차 할 일을 찾아갔고, 기록관리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록관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뿐 아니라 전담조직이 필요함을 체득하기도 하였다.

기록관, 기록연구사뿐 아니라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다른 한편 종이기록으로부터 전자기록으로 빠르게 전이됨에 따라 새로운 기록관리 환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2007년에는 기존의 「기록물관리법」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1)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1999) 제1조

(이하 「공공기록물법」으로 약칭)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새 법률에서는 전자기록이 지배적인 환경하에서 기록관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규정하였다. 전자기록 환경 하에서 보존시설, 전문요원, 전담조직 등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99년 이후 10년 동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역할

### 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정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물관리기관의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전 과정을 효율적이고 균형있게 운영하는 전문적인 통합·중개·조정 역할을 하는 자이다.<sup>2)</sup>

기록물관리업무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능이 참여한다. 즉 그 업무는 일반 행정, 정책개발 및 지도·감독 등 전문행정, 이용정보개발, 정보처리, 시설장비 운영관리, 교육 및 홍보, 이용 제공 및 자문 등의 일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 기록연구직은 물론 문헌정보전공 사서직, 역사전공 학예연구직, 전산관리분야 전산직, 보존환경 및 기록매체전공 공업연구직, 기술분야 기능직 등도 참여한다.

---

2) 이원규, 『한국 기록물관리제도의 이해』 진리탐구, 2002, 58쪽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물 생성기관의 업무기능과 기록물의 특성과 가치를 파악하여 기록물관리에 반영하고, 기록물의 이용에 적절하게 제공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한다.<sup>3)</sup>

미국의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는 크게 아키비스트(Archivist)와 기록관리자(Records Manager)가 있다. 『기록학 용어 사전』에 따르면, 아키비스트(Archivist)는 “① 기록의 진본성과 맥락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출처주의, 원질서 존중 원칙, 그리고 집합적 단위의 통제라는 원칙에 따라 지속적 가치를 지닌 기록의 평가, 수집, 정리·기술, 보존, 검색 제공 등의 책임을 지는 사람, ② 보존 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이나 지속적 가치를 지닌 기록에 대한 관리·감독에 책임을 지는 사람<sup>4)</sup>”으로 정의하고 있고, 주로 영구(준영구) 기록이나 역사 기록을 관리하는 기록물관리기관(Archives)에 근무하는 자이다.

반면에 기록관리자(Records Manager)는 “①기록 생애 주기 전반에 대하여 기록의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취급·보호·처분에 관한 정책과 행정에 책임을 지는 사람. ② 한 기관이나 조직의 기록관리 책임자<sup>5)</sup>”로 정의하고 있어서, 현용기록 혹은 준현용기록을 관리하는 기관(Records Center: 기록관)에 근무하는 자이다.

미국에서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근무하는 기관과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과 호주에서는 미국에서 기록관리자(Records Manager)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현용 기록의 관리를 아키비스트의 일에 함께 포함시킨다.<sup>6)</sup> 즉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역할 분담은 각 나라의 기록관리 전통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 이원규, 2002 위책, 58쪽

4) 한국기록학회 엮음, 『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2008, 156쪽

5) 위책, 53~54쪽

6) 위책, 156쪽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시대의 기록관리 전통은 일제하 식민 치시기를 거치면서 단절되었고 반면에 현대 기록학 이론은 최근에 소개되었으며, 또한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Records Manager)의 업무가 분화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도 기록관리 경험이 축적되어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역할이 기록관의 위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역할

1999년 제정된 「기록물관리법」에서 기록물관리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에 기록연구사가 배치된 것은 2005년 7월 이후였다. 그 이전에 정부기록보존소(국가기록원의 전신)에서 약간의 기록연구사를 채용하기는 하였지만, 2005년 2월 연구직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되면서 공공기관에 기록연구사의 배치가 본격화되었다.

이 시기는 국가기록관리의 혁신이 도모되는 시기였다. 1997년 말 김영삼정부로부터 김대중정부로 이양할 때 공공기록물의 과기가 매우 심각하였고, 그 반성 위에서 1999년 1월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공공기록물관리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다. 2004년 5월에 『세계일보』에서 3개월간 정부기록관리의 실태를 정밀 추적하여 ‘기록이 없는 나라’를 연재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부실을 집중 폭로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6월과 7월에 공공기록물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8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

---

7) 『세계일보』 2004년 5월 30일~7월 14일 특집기사 ‘기록이 없는 나라’

였고,<sup>8)</sup>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내 기록관리의 정비를 당부하였다.

2004년 1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에 ‘기록관리혁신위원회’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체도를 개혁해갔다. 참여정부에서는 ‘기록관리의 혁신을 매개로 정부의 개혁을 도모’해가고자 하였다. 대통령의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기록관리혁신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의 3 주체가 서로 협력하면서 국가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2005년 기록관리혁신로드맵을 국무회의에서 확정지으면서 정부 기록관리의 체계화를 추진해갔고, 그를 바탕으로 정부의 개혁을 도모해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2005년 2월 연구직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되면서 기록연구사 배치에 신기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를 바탕으로 동년 7월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45개 부서에 각 1명씩의 기록연구사가 배치되었다. 당시 배치된 기록연구사들은 내적·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공공기관에서는 기록연구사의 업무가 총무처에서 행하던 ‘문서정리’라고 여겨, 문서 정리와 기타 잡업에 해당하는 일을 맡기기도 하였다. 배치 직후부터 기록연구사들은 기록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이나 기록물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기도 전에, 기록물 정리·생산현황보고·이관 폐기·DB구축 등의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sup>9)</sup>

---

8) 그 후 대통령은 감사원에 의뢰하여 국가의 기록물관리체계 전반을 감사하도록 하였다. 감사원은 정부 설립 이래 처음으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기록물관리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감사를 벌여 “7개 분야에 걸쳐 42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권고 또는 주의 등 처분요구”를 하였다(양승조, 「국가공공기록물 관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2004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2004 참조).

9) 전수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의 성과와 역할」 국가기록원 제5회 기록관리포럼, 2009, 2쪽

4년이 지난 현재 각 기관의 기록연구사들은 자신들의 고유업무를 찾아가면서 전문성을 발휘해가고 있다. 그 동안 각 공공기관의 기록연구사들이 이룩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록관리에 관련된 제도를 만들었거나 개선한 것이다. 기록연구사들은 자료관 운영규정과 기록물 폐기심의회 운영규정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했고, 그 과정에서 기록관리의 원칙과 기록관리에 필요한 제도들을 확립해갔다. 둘째, 기록관리의 물질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록물 보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장비를 갖추어 안전한 보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보존과 업무 및 열람을 위한 공간으로 기록관을 마련하였다. 셋째, 기록관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기록관리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일반 직원 또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여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넷째, 기록관리의 실무적 측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기록물 보유현황조사나 기록물 DB 구축을 실현함으로써 기록물의 유실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기록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기록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 기록물의 폐기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행하게 함으로써 기록물의 무단 폐기를 막는데 크게 기여하였다.<sup>10)</sup>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행해야 하는 역할은 기록물 생성기관의 업무기능과 기록물의 특성과 가치를 파악하여 기록물관리에 반영하고, 기록물의 이용에 적절하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sup>11)</sup>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먼저 해당 기관의 기록관리에 적용되는 상세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처리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

---

10) 위 글, 3쪽

11) 이원규, 2002 앞책, 58쪽



록의 생산과 관리는 어떻게 하며, 생산된 기록물은 어떻게 등록하고 분류하며, 보관하는 지를 설계하고 구현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록물 폐기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기록물은 한 번 폐기하면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하면서도 책임성 있는 일이다. 셋째, 기관의 기록물을 잘 정리 분류하여 다양한 이용자에게 기록물을 서비스하는 일이다. 기록관리의 수준 높은 단계는 서비스 중심으로 발전해가는 일이다. 끝으로 해당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기록물 보호 관리와 국민들에 대한 공개 활용이라는 기록관리의 임무를 준수하도록 제도적 인식적 기반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다.<sup>12)</sup>

### 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요건

1999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sup>13)</sup>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제대로 된 기록물관리기관도 설치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한국기록학회 주최로 2002년 10월에 국회의사당에서 “아키비스트와 기록물의 보존관리”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면서, 연구자들이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제대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키비스트(Archivist)를 배치해야 하며, 그것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연구직에 기록관리 직렬

12) 전수진, 2009 앞 글, 5~7쪽

13)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과 직류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sup>14)</sup> 이에 2005년 2월에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 직렬이 신설되었고, 동년 7월에는 신설된 기록연구 직렬에 따라 중앙부처에 45명의 기록연구사가 채용되어 배치되었다.

그 뒤 2007년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명문화하였다.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①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의 수요과약 및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sup>15)</sup>

이 조항에서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수요와 양성에 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즉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수요 과약 및 양성을 비롯한 배치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명문화하

---

14) 조영삼, 「전문직렬제도의 현상과 기록연구직렬」 『기록학연구』 7, 2003

1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였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요건과 배치인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 1이상(4분의 1이 미만인 때에는 1인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기록물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기록물관리기관의 종사자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보직되기 전 또는 보직된 후 6월이 지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위 시행령 제7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2.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sup>16)</sup>이어야 한다.

그 외 검찰청이나 육군·해군·공군 및 경찰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 부분은 검찰·군대·경찰의 특수 임무를 인정하여, 그 기록관의 근무자 중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이 기관들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엄격해야 할 것이다.<sup>17)</sup>

그리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는 각급 기관 기록관에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18)</sup> 즉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규모가 커서 기록물관리 업무가 많은 기관에서는 2명 이상의 전문요원 배치를

---

1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17) 자격 예외에 대한 사항을 많이 인정하는 것은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18) 위와 같음

제도화하였다.

####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현황과 계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함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sup>19)</sup>을 말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sup>20)</sup> “기록물의 영구 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sup>21)</sup>을 일컫는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는 국가기록원이 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고,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sup>22)</sup> 국가기록원에는 현재(2009년 6월) 3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에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국회기록보존소, 법원기록보존소, 헌법재판소기록보존소, 선거기록보존소가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6개 광역시도와 광역 교육청에서 설립·운영

1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4항

20)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만 영구 및 준영구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으며, 기록관에서는 영구 및 준영구 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2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5항

22) 위 법률 제9조

할 수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설립 운영할 수 있다.<sup>23)</sup>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sup>24)</sup> 현재는 별도로 설립되어 있지 않고, 국가기록원 내에 소속되어 있다.<sup>25)</sup>

모든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단 특수기록관을 설립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sup>26)</sup> 특수기록관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sup>27)</sup>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특수기록관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검찰청 및 지청,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28)</sup> 이 기관들은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는 것을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sup>29)</sup>

부칙 제5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 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

23) 위 법률 제11조

2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5) 이영학, 「대통령기록관리제도 시행의 의의와 과제」 『역사문화연구』 33, 2009

26) 위 법률 제13조

27) 위 법률 제14조

28) 위법률 시행령 제11조

29) 이 장에서는 조이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국가기록원 제5회 기록관리포럼, 2009 를 많이 참조하였다.

시·도교육청 및 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구역의 인구수가 15만명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2011년 말까지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sup>30)</sup>

위 부칙에 기록된 사항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전문요원 배치대상 기관 및 배치시한

중 앙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타 공공 기관	계
본부	소속	광역시	기초* (15만 이상)	기초* (15만 미만)	광역시	지역** (7만 이상)	지역** (7만 미만)		
44	283	16	112	120	16	43	137	68	839
기배치***	2010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비고: \* 인구 기준 / \*\* 학생수 기준 / \*\*\* 방위사업청은 미배치)

(출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우리나라 839개의 공공기관은 2011년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2005년 2월에 연구직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이, 2007년 1월에 지방연구직공무원에 지방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되어 기록연구사가 배치되고 있다.<sup>31)</sup> 앞서 언급한 대로

3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조

2005년 8월 중앙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록원에서 45명을 선발하여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였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2006년 16개 시도에 38명의 정원을 확보하여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전문요원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각급 기관의 전문요원 배치현황은 다음과 같다.<sup>32)</sup>

<표 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

(’09. 3월 현재)

구 분	중 앙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타 공공 기관	계
	본부	소속	광역	기초 (15만 이상)	기초 (15만 미만)	광역	지역 (7만 이상)	·지역 (7만 미만)		
대상기관	44	283	16	112	120	16	43	137	68	839
정원확보 기관수 (확보정원)	43 (48)	0 (0)	16 (23)	20 (20)	2 (2)	12 (13)	3 (3)	1 (1)	0 (0)	97 (110)
전문요원수	50	0	16	10	0	5	0	0	0	81

출전: 조이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국가기록원 제 5회 기록관리포럼, 2009, 4쪽

<표 2>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권역별·기관유형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2005년 2월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학예 직군에 기록연구 직렬을 신설하였다. 2007년 1월에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록연구 직렬을 신설하였다.

32) 조이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국가기록원 제5회 기록관리포럼, 2009, 4쪽



<표 3> 권역별·기관유형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

(’09. 3월 현재)

권역 기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계
지자체	26	32	11	19	13	17	6	9	24	21	6	17	6	23	15	3	248
시·도	0	0	0	0	0	0	0	0	1	0	0	0	1	1	0	1	4
사·군·구	23	28	9	18	12	14	5	8	23	19	5	16	5	22	13	2	222
광역 교육청	0	0	1	1	1	1	0	1	1	0	1	1	1	1	1	1	12
소계	23	28	10	19	13	15	5	9	25	19	6	17	7	24	14	4	238

(비고: 지역 교육청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전무)

출전: 조이현, 2009 위글, 4쪽

<표 2>에서 보듯이, 중앙행정기관(44개 부처)에는 1명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었다. 그러나 <표 3>에서 보듯이 16개 광역시도에서 경북 등 4곳에서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았으며, 16개 광역교육청에서도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곳이 12곳이나 된다. 특히 인구 15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학생수 7만명 이상의 지역교육청은 2008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 2>에서 보듯이 155개 기관 중 10명 밖에 배치하지 않아 전문요원의 배치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008년 이후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가 늦어지는 이유와 배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요원의 배치가 늦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각 공공기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전문요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 아직 기관장을 포함한 공직 담당자들이 기록물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아 전문요원 배치의 시급성을 갖고

있지 않다. 둘째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작은 정부’ 기치를 내걸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를 감축하는 상황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정원 신설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즉 국가기록원의 상위기구인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으로 기관장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신설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sup>33)</sup>

2009년 3월 현재 전문요원을 채용하겠다고 공고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53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역·시·도 2개(광주, 제주), 기초자치단체 47개(충남 14, 충북 6, 경기 5, 강원 7, 경남 9, 광주 2, 전남 1, 서울 2, 인천 1) 교육청 4개(전북, 충북, 제천, 청주) 기관이다.<sup>34)</sup> 이 중 정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채용 공고한 기관은 53개 기관 중 15개 기관에 불과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채용 시기까지 정원을 확보한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중 보존연한이 끝난 기록을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sup>35)</sup> 즉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폐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33) 조이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국가기록원 제5회 기록관리포럼, 2009, 5쪽

34) 조이현, 2009 위글, 6쪽

3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하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시기 이전까지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공무원·특정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기록물 심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 제5조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시기를 경과하는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만이 기록물 심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전문요원을 채용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2009년 6월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21명을 채용하였고, 올해 하반기에 전문요원을 채용하고자 공고를 낸 기초자치단체도 66곳이나 된다.<sup>36)</sup> 앞으로 전문요원을 채용하려는 기초자치단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6개 광역시도와 광역교육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나 행정부 중앙부처의 기록관에서는 기관장 및 관리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인 경우, 종사자의 1/4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므로 추가로 선발하여 배치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시 기록물관리기관 중 큰 규모이거나, 혹은 중앙부처 중 많은 소속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대부처인 경우 기록물관리 업무가 증대될 것이므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더 배치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하면서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나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는 사실이다. 2008년 7월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전문요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공고를 내면서, 그 이후 인구 15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문요원 채용을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나 비전임 계약직으로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선발을 하는 곳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가 심하다. 경기도 의정부시,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화성시 등이 비전임 계약직으로 선발하였다. 비전임 계약직이란 시간제 고용직으로 지방공무원의

---

3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안건』 제8차 정기회(2009. 6. 26), 2009, 70쪽

정원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업무권한도 없는 신분이 불안정한 직위이다.<sup>37)</sup>

비전임 계약직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한다면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고용이 불안정하므로 업무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들이 기초자치단체의 기록물현황을 파악한다든가, 기록물을 심의·폐기한다든가 혹은 기초자치단체의 비밀기록·비공개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비전임 계약직에게는 전문직으로서의 도덕성이나 소명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비전임 계약직(시간제 근로)인 경우, 그들에게 기록관리의 열정 및 전문직으로서의 도덕성, 기관에의 소속감 등을 요구하기 어려우며, 기록관리업무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정규직이 바람직하다. 기관의 사정상 그것이 어려운 경우 전임 계약직으로 임명해야지, 비전임 계약직으로 지속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것은 기록관리의 첫걸음을 내딛는 일이다. 각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하는 일에 국가기록원에서도 적극 노력해야 하지만, 전국 대학원 기록관리학과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국 대학원 전공 주임교수 협의회나<sup>38)</sup> 기록관리단체 및 시민사회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기록관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첩경은 기록물

---

37) 전임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가입되는 반면에, 비전임계약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하며, 업무권한이 없고 하루에 보통 4시간 정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이다.

38) 국가기록원과 전국 대학원 전공 주임교수 협의회가 합동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전문요원 배치를 컨설팅하고 독려하고 있다.

관리 전문요원을 정규적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시켜, 해당 기관의 조직과 성격에 맞도록 기록관리제도를 정착해가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각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시급히 배치하는 일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 5.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양성

기록물관리기관에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것과 아울러 기록물관리 전문인력을 제대로 양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제대로 양성하여 배출해야 한다. 공공기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이 그들이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해당 기관의 조직과 성격에 맞게 창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갈 때,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그 효과를 인식하여 전문요원을 채용하려고 할 것이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거나, 2.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sup>39)</sup>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들이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선발되어 배정되면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갈 때 우리나라 기록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갈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3월 현재 기록관리 교육기관으로는 대학원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21개교가 개설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이 있다(<표 4> 참조). 1999년에 목포

---

3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대와 원광대가 대학원 기록관리학 전공을 설립한 이래, 매년 증가하면서 현재 수도권에 10개 대학, 지방에 11개 대학의 대학원에 기록관리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2008년 12월 현재 528명의 졸업자가 배출되었으며, 그 중 많은 인원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기록관리 유관업체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학원 기록관리학 전공에서는 교과과정에서 기록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시키고, 현장에서 학문적 이론을 적용하여 실질적 문제해결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 기록관리학 교육의 지향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있다.

< 표 4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유자격자 배출현황

대학교/교육원	설치 연도	배출인원(졸업자 수)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도권	명지대	2000	101	—	5	5	5	17	13	21	35
	서울대	2001	21	—	1	3	0	4	2	7	4
	한국외대	2001	63	—	—	5	4	4	6	15	29
	이화여대	2002	19	—	—	—	—	2	8	4	5
	중앙대	2006	8	—	—	—	—	—	—	—	8
	한양대	2007	—	—	—	—	—	—	—	—	—
	연세대	2007	—	—	—	—	—	—	—	—	—
	한신대	2007	—	—	—	—	—	—	—	—	—
	한성대	2008	—	—	—	—	—	—	—	—	—
	덕성여대	2008	—	—	—	—	—	—	—	—	—
충청권	광주대	2000	18	—	—	4	2	1	4	6	1
	충남대	2000	27	—	1	—	1	3	6	10	6
	한남대	2000	17	—	—	1	3	2	2	4	5
	중부대	2006	7	—	—	—	—	—	—	—	7
호남권	목포대	1999	7	1	—	2	—	—	1	1	2
	원광대	1999	17	—	—	2	3	1	2	1	8
	전북대	2004	19	—	—	—	—	—	—	13	6
영남권	경남대	2000	14	—	—	5	1	—	—	5	3
	부산대	2000	15	—	—	1	—	3	3	5	3
	경북대	2005	8	—	—	—	—	—	—	5	3
	신라대	2007	—	—	—	—	—	—	—	—	—
대학원 계	—	361	1	7	28	19	37	47	97	125	
8외 학위	—	2	—	—	1	1	—	—	—	—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1999	165	—	19	18	9	17	22	46	34	
총 계	—	528	1	26	47	29	54	69	143	159	

(2008.12 현재)

(출전: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 안내」, 2009)

기록관리학(혹은 기록학)은 역사학과 문헌정보학을 중심으로 행정학, 법학, 컴퓨터공학 등이 어우러져 학과를 운영해가고 있다. 기록관리학은 종합학문이면서 응용학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학문 전공자간에 상호 협조하여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전자기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록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활용이 일반화되었고, 이에 컴퓨터공학의 기여도가 커지고 있다.

대학원 기록관리학 전공의 개설과목은 분야별로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어떤 학자는 기초영역, 내용영역, 관리영역, 보조영역, 기타영역으로 구분하였고,<sup>40)</sup> 어떤 학자는 기록학 전문 지식과 관련된 교과, 기록관리업무지식과 관련된 교과, 맥락지식과 관련된 교과, 다학문지식과 관련된 교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sup>41)</sup>

국내 대학원에서 개설한 과목으로는 기록관리기초 및 총론에 해당하는 기록관리학개론, 기록관리학입문 등이 있고, 기록관리 원칙에 해당하는 기록의 정리와 분류, 기록의 평가, 기록의 보존 등이 있으며, 기록관경영 및 기록정보서비스, 전자기록관리론, 한국의 기록관리제도 및 외국의 기록관리제도, 실무지식을 익히는 기록관리실습 등이 있다.<sup>42)</sup>

1999년에 목포대학교에서 대학원 기록관리학과를 개설한 이후 21개의 대학원에 기록관리학 전공이 개설되면서 교과과정에서도 초창기에 비해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초창기에 미국, 캐나다, 독일, 중국 등의 교과과정이 소개되면서 그 나라들의 교

40) 최정태, 「‘기록관리학’, 그 교육의 방향--신설 9개 대학원 교과과정을 보면서-」 『기록학연구』 2, 2000

41) 김익한, 「전문요원제도와 기록관리교육의 질적 제고」 『기록학연구』 7, 2003

42) 이지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 양성과정 발전방안」 국가기록원 제5회 기록관리포럼, 2009

과과정이 원용되었고, 그 후 기록학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우리 나라 사정에 부합하는 교과목과 교과과정들로 정비되게 되었다. 전자기록관리연구나 전자기록관리시스템 등 교과목이 분화되거나, 한국기록관리제도 및 기록관리법 등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교과과정과 교과목에서 개선할 점은 교과목의 표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각 대학원에서는 학과의 설립목적에 따라 특성을 지닐 수 있지만, 기록관리기초 과목을 중심으로 교과목과 교과내용의 표준화를 모색해가야 한다. 예를 들면, 기록관리학개론, 기록정보서비스, 전자기록관리 등의 교과목들은 교과목명이 같거나 유사할 뿐 아니라 교과목표도 대체로 같기 때문에 워크숍 등을 통하여 교과내용을 표준화하는 공동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공동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8월에 ‘전국 대학원 기록관리학 전공 주임교수 협의회’를 결성하였지만 아직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 대학원 단위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아울러 대학원 학생들간의 공동커뮤니케이션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기록원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혹은 중앙부처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과 현장실무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체계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재교육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반공무원뿐 아니라 고급공무원에게 공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정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며, 국정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능률을 제고시키며,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일임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 기록관리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록생산기관, 기록물관리



기관, 전문가 집단(학회, 기록연구사단체 등), 시민단체 등 기록관리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연대를 필요로 한다.<sup>43)</sup>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었다. 법률 제정 이후,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의 기록관리가 인류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실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자세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6. 맺음말

지금까지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2004년 11월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에 ‘기록관리혁신위원회’가 신설되었고, 참여정부에서는 ‘기록관리의 혁신을 매개로 정부의 개혁을 도모’해가고자 하여 대통령의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기록관리혁신위원회,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혁신단의 3 주체가 서로 협력하면서 국가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왔다.

이 3주체가 협의하여, 2005년 2월에 연구직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되었고, 이어서 2007년 1월에 지방연구직공무원에 지방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되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채용되는 신기원을 마련하게 되었다.

---

43) 김익한, 「기록학의 도입과 기록관리혁신(1999년 이후)」 『기록학연구』 15, 2007

위 규정에 의해 2005년 7월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45개 부서에 각 1명씩의 기록연구사가 배치되었고, 그 후 그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각 중앙부처의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8년에 16개 광역시도와 광역교육청에서 기록연구사를 배치하기 시작하였지만, 2009년 중반에 이르러서도 기록연구사를 채용하지 않은 곳이 있다.

2007년에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6개 광역시와 광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2007년 말까지, 인구수 15만명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인 경우에는 2008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지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가 순연되고 있다.

현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은 기초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 기관에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각 공공기관에서 기록연구사를 채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구 15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또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요망된다. 특히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록관리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어렵고, 기록물의 폐기·비밀기록물 및 비공개기록물의 관리 등에서 도덕성 및 소명의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2005년 7월에 중앙부처에 채용된 기록연구사들은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자신들의 고유업무를 찾아가면서 전문성을 발휘해가고 있다. 4년 동안 근무하면서, 기록관

리에 관련된 제도를 만들었거나 개선한 점, 기록물 보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 장비를 갖추어 안전한 보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 점, 기록관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제고시킨 점, 기록물 보유현황조사와 기록물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을 이룩하였다.

또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전국의 대학원 기록관리학 전공에서는 전문요원들이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전문지식과 실질적 문제해결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양성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의 본질을 묻는 기록관리학원론은 물론, 최근에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전자기록관리·기록관리시스템 등을 익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혹은 지방기록관에서 활동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은 지방의 기록관리가 단순히 지방의 행정기록 관리를 넘어서서 지방의 문화수준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혹은 중앙부처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과 현장실무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체계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재교육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실제로 기록관 내지 기록물관리기관에 본격적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지는 4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제 배치되기 시작한 기록연구사들이 자기의 전문적인 영역을 확보해가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 헌 >

- 조이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국가기록원 제5회 기록관리포럼, 2009
- 전수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의 성과와 역할」 국가기록원 제5회 기록관리포럼, 2009
- 이지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 양성과정 발전방안」 국가기록원 제5회 기록관리포럼, 2009
- 김익한, 「기록학의 도입과 기록관리혁신(1999년 이후)」 『기록학연구』 15, 한국기록학회, 2007
- 곽건홍, 「한국 국가기록 관리 체제 ‘혁신’의 성격」 『기록학연구』 13, 한국기록학회, 2006
- 김익한, 「전문요원제도와 기록관리교육의 질적 제고」 『기록학연구』 7, 한국기록학회, 2003
- 오향녕, 「아키비스트 역할과 윤리」 『기록학연구』 7, 한국기록학회, 2003
- 조영삼, 「전문직렬제도의 현상과 기록연구직렬」 『기록학연구』 7, 한국기록학회, 2003
- 박지태, 「공공기관 자료관 설립 실태현황 조사 및 모델 연구」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보고서 3, 2002
- 정연경, 「미국 문헌정보학 대학원의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4호, 2002
- 정연경, 「캐나다의 기록학 대학원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3권 4호, 2002
- 김용원, 「기록관리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駿河台大學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 2001

- 최정태·윤송원, 「기록관리학의 정립과 기록전문가 양성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 한국기록관리학회, 2001
- 윤송원, 「기록관리사(Archivist) 양성을 위한 교육과 교육과정 연구」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최정태, 「‘기록관리학’, 그 교육의 방향-신설 9개 대학원 교과과정을 보면서-」 『기록학연구』 2, 한국기록학회, 2000
- 김영애, 「독일의 아키비스트 양성제도-마부르크 기록학교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 2000
- 이승휘, 「중국의 아키비스트 양성제도-중국인민대학 당안학원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창간호, 2000
- 김기석, 「기록과학과 기록관리전문가」 『국가기록보존관리-현실과 미래-』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창립심포지움 자료집, 1999
- 김태수, 「기록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 한국기록보존협회 세미나 자료집, 1999
- 이상민, 「기록관리학과 아키비스트 교육훈련제도」 『기록보존』 11, 정부기록보존소, 1998
- 김상호, 「한국기록보존사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28, 1998
- 감사원, 「공공기록물 관리 및 보존실태 감사결과」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2005
- 양승조, 「국가공공기록물 관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2004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2004
- 『세계일보』, 2004년 5월 30일~7월 14일 특집 ‘기록이 없는 나라’

ABSTRACT

##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 of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Lee, Young-Hak

This study examines current states of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after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 Act(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was enacted in 1999. The law forced to arrange records manager in Records Center. However the hire of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became in earnest in 2005.

Records Manager among the research officials was established in 2005 February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Because of this regulation, in 2005 July,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were arranged in each of 45 central department for the first time. Going through many trial and error,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contributed to systemizing record management of center department and office.

According to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totally revised in 2007, sixteen major cities and its public office of education decided to employ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until the end of 2007. In addition, minor cities which consists of people over 150,000 and public office of education which consist of the number of students over 70,000 are supposed to have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until 2008, but it is not accomplished yet.

Furthermore, when recruiting professionalists of records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employ not as a contract or a part-time employee or but as a regular or a full-time worker. Especially, if the specialists of record management were employed as a part-time employee, they would not concentrate on their work because of their unstable social positions. It means that changes from a contract worker to a regular employee are needed without further delay.

At first, records managers who were recruited at the Central Department in May 2007 had various kinds of difficulties and experienced trial and error. These days, however, they show their expertise with finding their own works. Someday in Korea, the records manager is expected to be a professional career with their know-hows and active movements.

**Key words: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Records Manager, Archives, Records Center**